

사업방법서 별지

(신변안전공제)

1. 공제의 종류 : 상해공제 / 기타

2. 공제종목의 명칭 : 신변안전공제

3. 공제의 목적

가. 테러·전쟁에 기인한 상해, 사망 및 중증장애에 따른 손실

나. 유괴 및 납치 등에 따른 각종 피공제이익

4.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

가. 공제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나. 공제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2회납, 4회납

5. 공제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없음

6. 기타

공제료의 반환 : 관계법규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